## 사기·사기방조

[수원지방법원 2006. 9. 21. 2006고단2768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권성희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동욱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